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재난 발생 시 환자 이송 등 지원한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재정 지원 〉

■ 임종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510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세일

목 차

I . 개요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	---

1. 재난 발생 시 환자 이송 등 지원한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재정 지원 ...	2
--	---

I. 개요

1. 임종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510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임종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7. 16.

(3) 회 부 일 : 2025. 7. 1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형 재난 발생 시 가용 보건의료 자원을 신속히 동원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대형산불이 민가에까지 번질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지역 주민은 물론 응급환자와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할 조치임.

이 중에서도 입원환자를 전원해야 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자체적인 이송 자원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음. 이 때 다른 의료기관이나 응급이송업체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이들에게 예상치 못한 운영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발생 상황에서 환자의 이송, 전원, 치료 등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이송업체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형 재난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재난 발생 시 환자 이송 등 지원한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재정 지원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제3조제1호1)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환자의 이송, 전원, 치료 등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등²⁾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재정 지원) ①·② (생략) <u><신설></u>	제16조(재정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환자의 이송, 전원, 치료 등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 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 8. 6.>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응급의료기관등”이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전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말한다.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의 취지인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환자의 이송, 전원, 치료 등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등³⁾에 대한 재정 지원과 관련된 현행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 먼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제18조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해 등으로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에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의료시설을 제공하거나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동 명령을 거부할 수 없음.

또한 「응급의료법」 제21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⁵⁾를 근거로 하여 응급의료기금은 재해 발생시 응급의료 활동에 필요한 의료인력의 여비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비의 지원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응급의료기관등”이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전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말한다.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해 등으로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거나,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의료시설을 제공하거나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③ (생략)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의료 지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재해시의 의료지원) 법 제2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은 재해 발생시 응급의료 활동에 필요한 의료인력의 여비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비의 지원으로 한다.

□ 다음으로, 「재난안전법」 제64조제1항6)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조치를 위한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요청, 응급조치를 해야 할 급박한 사정에 의한 응급부담 등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면 보상해야 함.

또한 「재난안전법」 제65조7)에 의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 등이 응급조치나 긴급구조활동을 하다가 부상·장애·사망의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금 지급 등의 조치를 함.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4조(손실보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 및 제45조(제46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보상하여야 한다.

제39조(동원명령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민방위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
 2. 응급조치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관계 직원의 출동 또는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3. 동원 가능한 재난관리자원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 대한 군부대의 지원 요청
-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5조(응급부담)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은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해당 재난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건축물·인공구조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7) 「재난안전법」 제65조(치료 및 보상) ①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제45조에 따른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이 응급조치나 긴급구조활동을 하다가 부상(신체적·정신적 손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입은 경우 및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지원을 포함한다)를 실시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며,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재난의 응급대책·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장비 등이 응급대책·복구 또는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그 자원봉사자에게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치료 및 보상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만 현행 「응급의료법」 및 「재난안전법」은 재난 상황에서 환자의 이송, 전원 및 치료 등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개정안은 이를 규정하여 응급의료기관등이 재난 시에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대형 재난 발생 시 응급환자와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재난 발생 시 의료기관·이송업체 등이 환자의 이송, 전원 및 치료 등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법안 취지에 공감

문 의 처
02)6788-5509